

#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1. 필요성

이동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 보안, 상거래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작년 ARC Group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매년 200~300% 성장률을 보이며, 2007년에는 세계 시장 998억불, 국내 시장 37억불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말부터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교통정보, 친구 찾기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2003. 7월, 가입자 376만명, 매출액 60억원/)(※ 위치기반 본인확인 safe카드 서비스(삼성카드), 화물추적/최적배차관리 서비스(CJ택배), 백화점 인근 지역에서 모바일 할인쿠폰 서비스(SKT))

위치정보의 수집은 기지국 Cell확인방식(이동전화, 무선랜, 블루투스 등 RFID 등), 기지국 삼각측량 방식, GPS방식 등이 있으며, 현재 주로 '이동전화 기지국 Cell 확인방식' 이나 'GPS방식' 을 이용하고 있으나, 응용서비스의 보급과정에서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 심부름센터 위치추적기 이용 사생활 뒷조사 심각(2002. 3, 한겨레), KTF 과실로 가입자 위치정보 누출 사고(2002. 1, 한겨레))

따라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도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기지국 방식의 위치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만 이용이 허용되며, 기타 방식으로 수집된 위치정보는 보호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2. 국내의 관련법 현황

### ● 국내법

위치 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은 없으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_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과 통신일시 및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수사상 목적 외에는 그 내용 및 자료의 이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발신 기지국의 위치정보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로서 수사목적 이외에는 누구도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_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상·신념·병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동의없이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사회경제적인 목적 및 공익증진 등을 위해 보다 특별하게 다루어야 할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인정(※신용정보나 의료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재경부)과 '의료법'(복지부)을 통해 그 이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하고 있다.

#### ● 해외 관련 법률

미국은 위치정보를 공공구조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에 관련법을 제정·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민간 부분에서 이용 중인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 중이며, 유럽은 EU Directive를 통해 위치정보를 공공구조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1999년에 e-911서비스를 위해 'Wireless Communications & Public Safety Act'를 제정하여 이동통신사에게 911발신자의 위치를 공공구조기관에게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 2005. 12월까지 각 사업자는 가입자 95%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또한 2001년부터는 민간에서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명시적인 사전 동의'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를 추진하고 있다.(※ 2001 년말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2003.5월 현재 의회 2차 심의를 거침)

\*EU는 2002년 3월 'e-112를 위한 EU Directive'를 통해 역내 국가는 2003년 7월까지 e-112서비스 실시준비를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2002년말에는 'Privacy 및 전자통신에 관한 EU Directive'를 통해 위치정보 이용시 '이용자의 사전동의', '이용자의 일시적인 수집 거부권' 및 '위치정보 처리사업자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홍콩에는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아직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법이 없다.

### 3. 법률(안)의 주요내용

#### ● 제정방향

위치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분류와 각 사업의 진입과 퇴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시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방안의 채택 및 공공목적으로의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치정보의 건전한 이용촉진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시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 법률안의 주요내용

\*사업추진 체계(제5조~ 제11조)\_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이를 응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업의 진·퇴출과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사업내용	진 입	서비스 제공	퇴 출
위치정보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의 수집·제공</li> <li>•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의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약관(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양수(인가)</li> <li>• 휴지·폐지(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의 제공 절차와 방법은 정통부령으로 위임</li> </ul>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를 응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제공</li> <li>※ 경호, 미아찾기, 노약자보호, 쿠파제공 및 택배서비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에게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약관(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도·양수(신고)</li> <li>• 휴지·폐지(신고)</li> </ul>

\*사업자의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의무(제12조~제21조)\_사업자가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시 확보한 위치정보의 관리 또는 이용범위 등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위치정보시스템 구성	수집과 이용	이용 및 제공 범위
위치정보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li> <li>- 보안 알고리즘, 방화벽 및 관리자 지정 및 관리규정 마련 등</li> <li>•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접근사실을 자동 기록·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필요</li> <li>• 업무의 위탁금지</li> <li>•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위치정보를 즉시 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외 이용금지</li> <li>• 허가받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 금지</li> </ul>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때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용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철회권', '수집 동의에 대한 일시적 거부권'
- '수집, 이용 및 제공사실에 대한 열람 및 고지 요구권'
- '손해배상 및 재정/분쟁조정 신청권'

\*사업자의 공공목적으로의 위치정보의 제공(제22조~제24조)\_위치정보사업자는 공공구조기관이 요청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목적으로의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구조기관의 범위', 긴급구조시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정확성 및 응답시간' 등)

\*건전한 위치정보의 이용기반 조성(제25조~제28조)\_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지원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등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 집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제10조, 제29조~제33조)\_사업추진 체계,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무 등 법 위반정도에 따라 사업허가 취소, 과징금 및 벌금 등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대상 위반행위
허가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 인가를 받은 때</li> <li>• 업무 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등</li> </ul>
사업정지(과징금) ※사업정지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 때</li> <li>•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li> <li>•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li> <li>•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 때 등</li> </ul>
징역 및 벌금	5년, 5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한 자</li> <li>•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li> </ul>
	3년, 4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 자</li> <li>• 고지 혹은 약관의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이용한 자 등</li> </ul>
	1년, 3천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li> <li>• 공공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거부한 자 등</li> </ul>